

서 울 특 별 시

0013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 전화(02)774-8535/전송(02)774-6763

문서번호 윤이 33120 - 20

시행일자 1992.1.14. (년)

(경유)

수신 각 암 참조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i>1/14</i>
부시장	전 결		
국 장	<i>1/14</i>	법무 담당관 <i>정석</i>	
과 장	<i>1/14</i>	예산 담당관 <i>이현</i>	
계 장	<i>1/14</i>	기안 송 기호	협 조

제목 '92 택시운전 자격제 시행 및 시험계획 공고

(제1안)

수신 내 부 결 재

제목 같은 건

1. 운수사업법 제33조의4, 통령 시행령 제9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30조의 제2
내지 10항에의한 택시운전자격제 시행 및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방법: 신문(일간지 2개사)

나. 규격: 4 단 20cm

다. 소요예산: 31,000원 × 4단 × 20cm × 1,1 × 2개사 = 5,456,000원

(관) 교통관리비 (항) 교통관리 (세항) 운수지도 (목) 수용비 및 수수료

라. 공고내용: 문안 별첨

첨부 신문공고 '문안1부'

(제2안) 20

수신 홍보계획 담당관

발신 운수2과장

제목 '92 택시운전 자격제 시행 및 시험계획 공고의뢰

1. 운수사업법 제33조의4, 통령시행령 제9조 및 동령시행규칙 제30조의 제2내지
10항에의한 택시운전 자격제시행 및 시험계획을 별첨과 같이 공고의뢰 합니다.

제1안"가-라"항 이기시행

첨부 공고문안 3 부 끝

(제3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92 택시운전 자격제 시행 및 시험계획 공고 통보

1. 운수사업법 제33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제2내지 10항에 의한 택시운전 자격제 시행 및 시험계획을 별첨과 같이 공고하였기 통보하니 (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하시고)

2. 특히 응시 운전기사들이 불편이 없도록 계몽, 홍보,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해당조합(법인, 개인)에서는 91. 9. 26이전 취업자나 취업하였던자의 자격증 발급 신청기한이 92. 3. 26까지임을 주지시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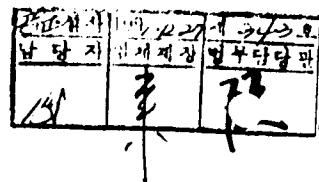
첨부 공고문안 1 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서구1 ~ 22(지역교통과장), 서울시 새마을 교통연수원,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공고 제 1호

(안)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할 운전사를 찾습니다

~~의원~~

~~시운자운수사업법 제33조의4~~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내에서 택시운전업에 종사한 운전자의 1992년도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2. 1.

서울특별시장

1. 응시자격

가. 서울시내에서 택시운전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제7호
(제1종 운전면허)의 면허증 소지자.

2. 시험과목 및 방법

가. 시험과목

과	과	방	시험
필기 시험	지리, 교통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일반교양.	선택형 (100문항내)	오전
면접 시험	지리, 심성		오후

나. 합격자 결정: 필기및 면접시험 모두 6할이상 득점자를 합격으로 한다

3. 시험시행 일정및 방법 (발급신청 포함)

가.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시 새마을 교통연수원 교학과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7 전화:414-0897)

나. 인서류수 기간 ~~수시~~ 평일 10:00 ~ 17:00
~~수시~~ 토요일 10:00 ~ 12:00

다. 시험일시 및 장소 : 원서접수시 안내및 공고 (매월 1회이상 실시)

라. 구비서류 : ①응시원서 1 통 ②사진 2 매(최근 6개월내 촬영한 상반신 반
명함판 3,5cm×4,5cm) ③운전면허증 사본(접수시 지참)
④응시 수수료 (3,000원 상당의 수인증지) ⑤ 인장

마.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송

사. 합격자 발표 : 시험시행후 7일이내 원서접수장소에 게시·공고함

4. 자격증 발급 및 교부

가. 발급 --- 구비서류 ①신청서(소정양식)
②수수료 1,400원
③사진 2매

나. 교부 --- 신청후 7일이내 접수장소에서 교부

5. 경과조치규정에 따른 시험면제 및 특례

가. 시험의 면제

0.91, 9.26 이전에 적법하게 택시운전에 취업하였거나 취업하였던 경력자는
92.3.26 까지 자격증발급 신청서를 소속회사 및 해당조합의 경력확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신청.

나. 시험의 특례

0. 서울특별시 이외에서 시행한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한자는 필기
시험중 지리를 제외한 과목은 면제한다.
0. 필기시험에 합격한자가 면접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필기
시험을 면제한다.

6. 자격증 차내 게시 및 시행

- 가. 자격 취득자가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해당조합(개인, 법인)에 차내
게시용 자격증발급을 별도로 신청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 나. 미게시 벌칙 : 자격정지 5 일, 무자격운전 벌칙 : 과징금 20만원
- 다. 시행시기 : 92. 5. 1 예정

응시자 주의사항

- 가.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휴대폰(컴퓨터용 휴수정 씨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한다.
- 나.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사진1매 재출)
- 다. 본 시험계획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시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시험 10일전 까지 교통연수원 개시판에 개시공고한다.
- 라.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윤수2과(774-8534) 또는 서울시 새마을 교통연수원(414-08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